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621
----------	------

제출일자 : 2015. 4. 31

제출자 : 안산시장

## 1. 제안사유

-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GS건설컨소시엄과 기본협약 체결 이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기본협약 당시의 사업계획과 제안내용이 미반영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 2014. 10. 30. 공모 시 제안했던 핵심 사항인 토지비 6,013억원 일시납부, 70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발전기금 2,000억원은 반영 하였으나, R&D 및 업무시설 규모의 축소, 숙박시설인 호텔을 미도입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 관련부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영 및 시의회 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GS컨소시엄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R&D 및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의 규모를 기본협약 당시 사업계획 수준으로 조정하였음.
- 따라서 기본협약 당시의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된 만큼 시의 재정확충은 물론 R&D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을 조성 하기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안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 □ 대상 토지 현황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재산가액 (공시지가)	비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	대지	369.835.7㎡	상업지역	6,087억원	1,646,000원/㎡

### □ 매각금액

-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의거 외국투자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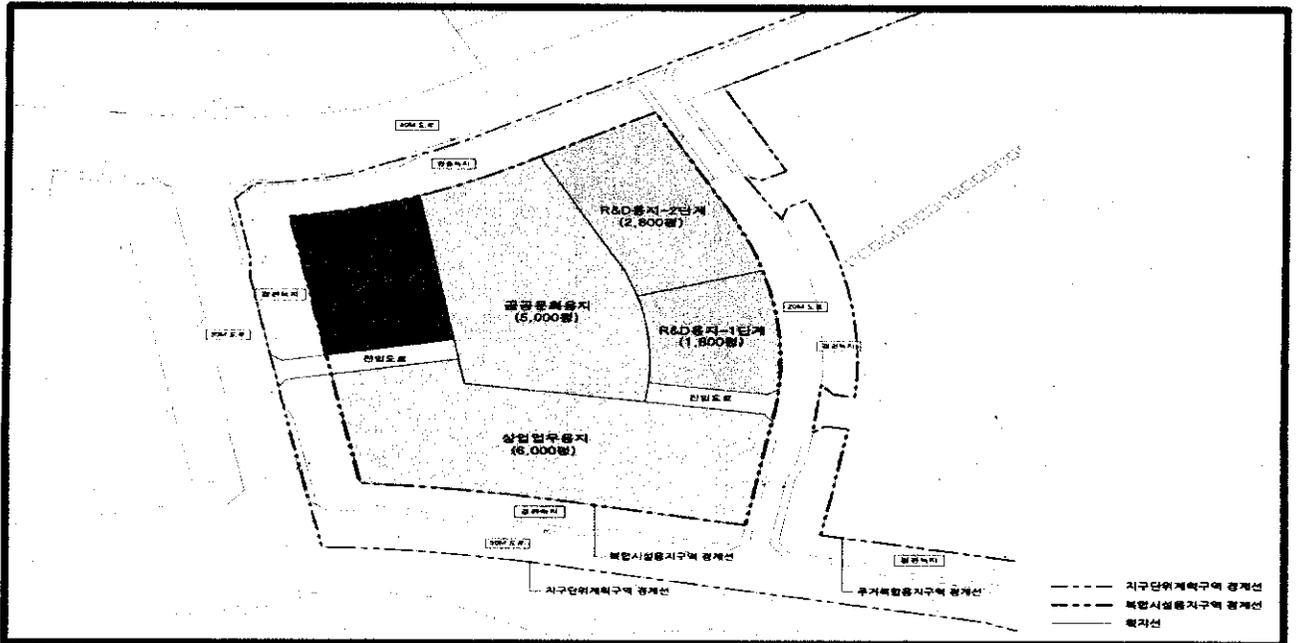
### □ 사업개요

- 사업명 :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 협상대상 : GS건설컨소시엄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복합R&D, 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공공시설
- 제안내용
  - 토지매입비 :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결정 후 일시납부
  - 문화·공공시설 : 1만평(700억원 상당) 기부채납
  - 발전기금 : 2,000억원

### □ 시설별 개발계획

구분	합계	주거	비주거					
		공동주택	소계	복합R&D	상업	호텔	문화/예술	공공
연면적(평)	561,712	326,330	235,382	128,362	47,020	40,000	10,000	10,000
비율(%)	100	58.10	41.90	22.85	8.37	7.12	1.78	1.78

### □ 복합용지 획지 계획



### □ 개발계획 변경 내역

구분	기본협약체결 (08년 3월)		조정사업안 (14년 10월)		최종 사업계획 (15년 3월)			
	연면적(평)	비율(%)	연면적(평)	비율(%)	연면적(평)	비율(%)		
주거	공동주택	375,950	61.50	309,240	68.97	326,330	58.10	
	소계	6,600세대		6,600세대		6,600세대		
비주거	복합 R&D	128,362	21.00	72,140	16.09	128,362	22.85	
	판매/상업	47,000	7.70	47,020	10.48	47,020	8.37	
	호텔	40,000	6.50			40,000	7.12	
	기부채납	문화예술	10,000	1.60	10,000	2.23	10,000	1.78
		공공시설	10,000	1.60	10,000	2.23	10,000	1.78
소계	235,362	38.50	139,160	31.03	235,382	41.90		
합계	611,312	100.00	448,400	100.00	561,712	100.00		

○ 공동주택

- 202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상 최대개발 가능인구 반영  
☞ 6,600세대 (17,800인, 2.7인/세대)

○ 복합 R&D

- 기본협약 당시 규모(128,362평)로 개발. ☞ 56,222평 상향조정.
- 복합 R&D 1단계 12,000평은 우선 건립, 2단계 34,931평은 미 건립 시 동일한 용도로 부지매각 또는 대지면적(2,800평)만큼 시에 기부채납.
- 업무시설 1단계 60,140평은 우선 건립, 2단계 21,291평은 투자자 요청 시 부지매각

○ 판매/상업 시설

- 판매 시설의 적정수요 파악 및 기존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 시에서 규모 조정을 요구할 경우 재검토 가능.

○ 숙박시설(호텔)

- 반달섬 호텔 계획 무산 및 투자자 유치 시 건립하며, 미 건립 시에는 해당 부지면적(2,400평) 만큼 시에 기부채납. ☞ 40,000평 상향조정.

○ 문화예술 및 공공시설

- 공모 시 제안했던 대로 시 에서 요구하는 700억 상당의 문화예술 및 공공시설을 건립 후 기부채납.

□ 추진사항 및 계획

- 제안 모집 공고 : '07.02.14.
- 최종 제안 선정 공고(GS건설컨소시엄) : '07.06.08.
- 기본협약 체결(안산시 ↔ GS건설컨소시엄) : '08.03.28.
- 반월특수지역 해제 결정 고시(국토해양부) : '10.05.11.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13.01.16.
- 세부사업계획 제출(GS→안산시) : '13.08.30.  
☞ 당초 공모 시의 제안내용 미반영
- 사업계획 변경협의 불가통보(안산시→GS) : '13.10.21.
- 90블록 개발사업 관련 후속조치 이행촉구(안산시→GS): '14.08.14.

- 90블록 개발사업 사업계획 제출(GS→안산시) : '14.10.30.
- 90블록 복합개발사업 T/F팀 운영 : '14.11.14.~
- 시 의회 설명회 : '15.02.11.  
↳ 기획행정위원회 : 11:00, 전체의원 설명회 : 16:00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상정 : '15.03.13.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15. 4.
- 90블록 토지 감정평가 의뢰 : 2015. 5.
- 실시협약 체결 : 2015. 6.
- SPC 설립 : 2015. 7.
- 토지매매 계약 체결 : 2015. 8.
- 사업계획 인가 : 2015. 10.

### 3. 단위사업 세부계획 : 붙임

### 4. 관계법령 발췌내용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